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정연욱 어태영 바정하

이성권 · 김도읍 · 서지영

박상웅 • 박수민 • 정동만

김소희 · 김민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 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제6호의2 및 제18조의9제4항 신설).

또한,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

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,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9항 및 제34조제10항 신설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와 경기단 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에 관한 사항

제18조의9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한다.

제3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체육회 및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3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

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
립) ①・② (생 략)	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	③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의2.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
	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
	와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
	심의에 관한 사항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	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
	고,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
	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
	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
	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
	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한다.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⑧ (생	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⑧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체육회 및 체육회에 가맹된
	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
	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
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 수 있다. 다만,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 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

정할 수 있다.